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강정애 (국가보훈부장관)
제출 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074호, 2024. 1. 23. 공포, 2024. 7. 24. 시행)됨에 따라 국립서울현충원 관리·운영 등에 관한 국방부장관 소관 사무의 국가보훈부장관 이관 및 생전(生前) 국립묘지 안장 여부에 대한 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요건을 질병으로 인한 사유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시행령에 반영하고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의사상자와 국가사회공헌자의 경우 안장대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는 당연 배제 사항은 심의에서 제외(안 제5조)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5항 각호에서 당연 안장 배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은 심의에서 제외

나. 국립서울현충원 소관 사무가 국방부장관에서 국가보훈부장관으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 조항에서 국방부장관을 삭제(안 제12조, 제12조의2, 제13조, 제13조의5, 제20조, 제25조의2, 제26조, 제27조)

다. 생전(生前) 국립묘지 안장 여부에 대한 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요건

을 질병으로 인한 사유까지 확대(안 제12조의2)

질병으로 인한 사유는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근원적인 회복의
가능성이 없어 수개월 이내에 사망이 예상되는 경우로 정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국방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나목 중 “전라북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

제5조제4항 중 “법 제5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법 제5조제5항제5호”로 한다.

제12조의2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법 제11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 또는 질병으로 인한 사유”란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연령 : 75세 이상
2. 질병으로 인한 사유 :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근원적인 회복의 가능성이 없어 수개월 이내에 사망이 예상되는 경우.

제13조제1항제3호 중 “국가보훈부장관과 국방부장관이 협의하여”를 “국가보훈부장관이”로 한다.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가보훈부장관 및 국방부장관”을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제27조 중 “포함한다) 또는 국방부장관”을 “포함한다)”로 한다.

제12조제1항 본문, 제12조제3항, 제12조제4항 전단, 제12조의2제1항, 제12조의2제5항, 제12조의2제6항, 제12조의2제7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2항, 제13조제3항 전단, 제13조의5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1항, 제20조제2항 및 제25조의2 제목 외의 부분 중 “국가보훈부장관 또는 국방부장관”을 각각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2024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6호나목 및 제5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국립묘지의 위치)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국립묘지의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국립묘지의 위치) ----- ----- -----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국립호국원	6.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국립임실호국원: <u>전라북도 임실군 강진면 호국로</u>	나. ----- <u>전북특별자치도</u> -----
다. ~ 바. (생 략)	다. ~ 바. (현행과 같음)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제5조(의사상자 중 안장대상자 선정절차) ① ~ ③ (생 략)	제5조(의사상자 중 안장대상자 선정절차)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심의위원회는 의사상자가 제3조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와 <u>법 제5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u> 해당하는지 등에 관하여 심의하고, 의사상자의 국립묘지 안장대상 해당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 ----- ----- <u>법 제5조제5항제5호</u> ----- ----- ----- ----- -----.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③ 국가보훈부장관 또는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 중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국립묘지 안장 대상으로 결정된 사람의 안장등의 신청의 경우에는 신청된 사람이 안장 대상 결정 이후 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안장 대상자에 해당하는지와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안장 대상 결정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야 하며, 그 결과 안장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거나 안장 대상 결정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안장 대상 결정을 취소하고, 그 사실을 유족 또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④ 국가보훈부장관 또는 국방부장관은 국립묘지 안장등의 대상으로 신청된 사람의 국립묘지 안장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안장등을 신청한 유족 또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장등의 대상으로 신청된 사람을 국립묘지에 안장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국립묘지관리소장에
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⑤ (생 략)

제12조의2(생전 안장 대상 결정
신청 등)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안장 대상자 본인이 생전
(生前)에 국립묘지의 안장 대상
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결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생전 안장
대상 결정 신청서에 국가보훈부
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 또는 국방부장
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11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이
란 75세 이상을 말한다.

③ (생 략)

④ 삭 제

-----.

⑤ (현행과 같음)

제12조의2(생전 안장 대상 결정
신청 등) ① -----

국가보훈부장관-----
-----.

② 법 제11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 또
는 질병으로 인한 사유”란 다음
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를 말한다.

1. 연령 : 75세 이상

2. 질병으로 인한 사유 : 적극적
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근원적
인 회복의 가능성이 없어 수
개월 이내에 사망이 예상되는
경우.

③ (현행과 같음)

⑤ 국가보훈부장관 또는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이 법 제11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하고, 그 사실을 해당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심의를 의뢰받은 심의위원회는 그 심의결과를 국가보훈부장관 또는 국방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하며, 심의결과를 통보받은 국가보훈부장관 또는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이 사후(死後)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신청인 및 국립묘지관리소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⑦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국립묘지 안장 대상으로 결정된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유족 또는 관계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 또는 국방부장관에게 안장등의 신청을 해야 한다.

제13조(심의위원회의 심의) ① 제

⑤ 국가보훈부장관-----

--.

⑥ -----

국가보훈부장관-----

----- 국가보훈부장관-----

-----.

⑦ -----

----- 국가보훈부장관-----

-----.

제13조(심의위원회의 심의) ① --

국가

보훈부장관

1. -----

2. -----

- 2의 2. -----

3. -----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경우와 국가보훈부장관과 국방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5조제5항제5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심의를 의뢰받은 심의위원회는 그 심의결과를 국가보훈부장관 또는 국방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심의결과를 통보받은 국가보훈부장관 또는 국방부장관은 안장등의 대상으로 신청된 사람의 국립묘지 안장 여부 또는 묘의 면적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국립묘지에 안장신청을 한 유족 또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장등의 대상으로 신청된 사람을 국립묘지에 안장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국립묘지관리소장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의5(국립묘지시설사업의 대행) ① (생략)

----- 국가보훈부장관
이 -----

② -----

국가보훈부장관-----
-----.

③ -----
----- 국가보훈부장관-----

-----.

제13조의5(국립묘지시설사업의 대행) ① (현행과 같음)

② 국가보훈부장관 또는 국방부장관은 법 제11조의10제1항에 따라 국립묘지시설사업을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대행자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국립묘지시설사업의 시행지
2. 국립묘지시설사업의 종류 및 규모
3. 국립묘지시설사업의 시행기간
4. 국립묘지시설사업비의 지급
· 관리 및 정산에 관한 사항
5. 협약의 변경에 관한 사항
6. 협약 위반 시 조치에 관한 사항

③ (생략)

제20조(국립묘지 시설의 관리 등)

① 국립묘지관리소장은 국립묘지 시설의 증감이나 개선 등 국립묘지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중요한 사항을 처리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국가보훈부장관 또는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국립묘지관리소장은 국립묘

② 국가보훈부장관-----

-----.

1. -----

2. -----
--

3. -----
--

4. -----

5. -----

6. -----
--

③ (현행과 같음)

제20조(국립묘지 시설의 관리 등)

① -----

----- 국가보훈부장관 ----

--.

② -----

지의 주요사업에 관한 계획 및 실적, 계획의 변경 등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미리 국가보훈부장관 또는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5조의2(관계 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자료 등의 범위) 국가보훈부장관 또는 국방부장관이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육군·해군·공군 참모총장을 포함한다), 국회의원사무총장 또는 법원행정처장 등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는 별표와 같다.

제26조(권한의 위임) ① 국가보훈부장관 및 국방부장관은 법 제2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소속 국립묘지관리소장에게 위임한다.

1. ~ 9. (생략)

② (생략)

제27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가보훈부장관(제26조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국방부

-- 국가보훈부장관-----
-----.

제25조의2(관계 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자료 등의 범위) 국가보훈부장관-----

-----.

제26조(권한의 위임) ① 국가보훈부장관-----

-----.

1. ~ 9.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27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 포함한다)-----

장관은 법 제11조에 따른 안장 신청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 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 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 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 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 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 료를 처리할 수 있다.	----- ----- ----- ----- ----- ----- -----.
--	---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가보훈부 에우정 책과	
연 락 처	(044) 202 - 5583